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투자신탁(주식)

□ 변경 사항 : ①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3. 3. 3.

□ 변경 내용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재 정정 안내	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<u>되는 날에</u>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<u>경과하였음에도</u>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요약정보
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2. 8. 31. 기준	2022. 12. 30. 기준
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수익률)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2023. 1. 28. 기준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2. 8. 31. 기준	2023. 1. 31. 기준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세액 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4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<u>연 700 만원</u>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	세액 공제 : <u>(2023.1.1.이후)</u>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6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<u>연 900 만원</u> 한도로 12% <u>(종합소득금액 4.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)</u>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
----	--------------	--	---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3. 1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에 관한 사 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3. 1. 31. 기준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- 다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3. 1. 31. 기준</u> <u>2022. 12. 30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<u>아래 별첨 참조</u>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<u>아래 별첨 참조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③ 세액공제(2015. 1. 1. 부 터)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4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(종합	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③ 세액공제(<u>2023. 1. 1. 이 후</u>)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6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과 퇴

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300 만원 이내)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 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	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로 12%(종합소득금액 4.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--	--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1. 28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1. 28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1. 28.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3. 1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8. 31. 기준</u>	<u>2023. 1. 31. 기준</u>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3. 공시에 관한 사항	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	(2) 수시공시	(2) 수시공시
		사항 반영	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	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

·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 ·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
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 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
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
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
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

① (생 략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
결정 및 그 사유

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
결정 및 그 사유(법 제 230
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
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
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
그 사유를 포함한다)

③ ~ ⑩ (생 략)

③ ~ ⑩ (현행과 같음)

※ 별 첨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
공제제도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	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	15%
	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(900만원)	12%
	※지방소득세 별도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		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		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		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		
해지가산세	없음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지방소득세 포함)		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		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 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대상	50세 이상 세액공제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대상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	600만원 (900만원)	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		12%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	300만원 (700만원)			

※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[변경 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 (900만원)	15%
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〈삭 제〉

〈신 설〉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